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73
----------	------

발의연월일 : 2017. 6. 1.

발의자 : 김성찬 · 유기준 · 이종명  
홍문표 · 문진국 · 이주영  
김종회 · 나경원 · 이은권  
박덕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의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1)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해역에서 배출하는 경우
  - 2)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해역관리청에 보고하는 경우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
  - 4)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고립처분 하는 경우
  - 5)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경우

라.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안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2) 해역관리청이 부유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3)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하되,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습지 조성 및 복원 등의 용도로 유효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아.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자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해양폐기물”이란 해양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3.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4.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 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하천·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역관리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 등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하거나 직접 조사·수거·정화를 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수거·정화를 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고립처분 등)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방법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이하 “고립처분”이라 한다)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방법 및 기준, 고립처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등)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지질구조 내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하여 저장후보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등)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해안가에 있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침적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조사 또는 수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해양오염퇴적물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유효활용)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활용(이하 “유효활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의 양빈(養濱),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유효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활용의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유효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해양배치) ①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 저감물질을 해양에 살포(이하 “해양배치”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배치하고자 하는 해역의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배치 전후의 해양환경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2. 침적폐기물수거업: 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 하는 사업
-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그 밖의 해양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 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폐기물관리업자(휴·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3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양배출 검사기관: 폐기물의 해양배출 허용 여부 등에 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검사·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 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은 “지정”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5. 제2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제2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29조(재정 및 기술적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해양폐기물 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

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설치·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제27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양폐기물 관리업에 사용되는 시설·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별칙 등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혜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배치를 한 자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3. 제2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5.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또는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침적폐기물수거업 등록

을 한 것으로 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별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④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

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고립처분하는 행

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수거,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수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 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 장치를 설치한 자 및 제70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를 “선박급유업자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 장치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115조 제3항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 및 제76조에 따른 폐기물위탁자”를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및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119조의2 제1항 제2호, 제123조 제3항 제5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2항 제1호, 제132조 제2항 제7호·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